##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전주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5599

발의연월일: 2022. 5. 13.

발 의 자:전주혜·강민국·정우택

윤창현 • 배준영 • 서정숙

서일준 • 이종성 • 김승수

김미애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촬영·보존하도록 하고, 그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기일에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영상물에 수록된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증인신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한 2차피해의 방지를 위한 대안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현행법에서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영상물을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서 증언이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려는 것임(안 제30조).

#### 법률 제 호

###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0조제6항 중 "공판준비기일"을 "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판준비기일"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19세 미만인 피해자가 증언으로 인해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증언이 있는 경우
- 2. 19세 미만인 피해자가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행동으로 인해 증언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사가 인정하는 경우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0조(영상물의 촬영·보존 등)	제30조(영상물의 촬영·보존 등)
① ~ ⑤ (생 략)	①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	6
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	
<u>공판준비기일</u> 또는 공판기일에	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
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	는 공판준비기일
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	
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	
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	
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.	
<u>&lt;신 설&gt;</u>	<u>1. 19세 미만인 피해자가 증언</u>
	으로 인해 정신적 트라우마에
	시달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
	<u>가의 증언이 있는 경우</u>
<u>&lt;신 설&gt;</u>	2. 19세 미만인 피해자가 증인
	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또는
	변호인의 행동으로 인해 증언
	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사가
	인정하는 경우
⑦ (생 략)	⑦ (현행과 같음)